

적십자표장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적십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표장입니다.

적십자가 응급처치나 의료기관을 위한 표장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부상자, 병자, 포로, 민간인, 구호요원, 의료요원 등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며, 이는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체결, 공포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제네바협약의 계약당사국으로 적십자 표장의 특별한 의미를 널리 알리고 표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군의료기관은 국제법인 제네바협약과 국내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적십자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다른 개인이나 기관이 적십자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는 위법행위입니다.

적십자표장 오·남용 사례를 발견하면, 대한적십자사 해당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기관명	주 소	연락처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02-2290-6600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051-804-4000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053-550-7100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미로 220	032-815-5015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산시 중구 성안8길 71	052-210-9595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129	031-230-1600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033-255-9595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 1000	043-230-8600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042-220-0100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063-280-5800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062-573-0541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053-250-9800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055-278-2780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064-758-3501

판매업,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
광고업, 인쇄업 종사자 및 일반 시민 여러분!



적십자표장을
(Red Cross Emblem)
알고 계십니까?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Tel. 02-3705-3690~2
www.redcross.or.kr/ihl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표장은
제네바협약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군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좀 더 알고 싶다면, 리플릿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표장의 오·남용

적십자표장의 가장 많은 오·남용 사례는 건강, 의료, 약학, 응급처치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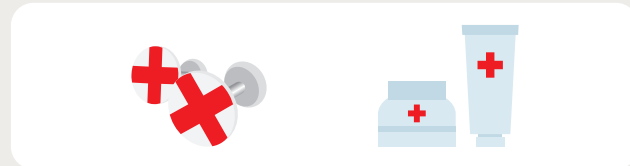
국내·외법으로 보호되는 적십자표장의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오·남용된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무력충돌상황에서 '보호'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약화되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 기반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십자표장의 오·남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X



2 제품에 적십자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X



3 응급처치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X



4 색상과 형태가 적십자표장과 유사하여 혼동이 되는 경우 X



5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X



6 적십자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X



7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X



8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X



해당 사례들은 위법행위이며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표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표장 위반사용 제품들은 폐기,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거 적십자, 제네바적십자와 같은 적십자 유사 명칭의 사용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십자표장을 대신하여 다음의 대안표장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